

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

의안 번호	9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- 나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(제4조)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경과

- 2019. 6.10 ~ 7.19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 (총26개국 37명)
- 2019. 7.22 ~ 7.30 공적·거주기간 등 자료 검토
- 2019. 7.31 2019 명예시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(추천자 37명 중 19명 선정)

나. 선정결과 : 총 19명(남 14명, 여 5명) ※세부명단 별첨

- 국적별 : 14개국(※ 국가별 가나다순)

네팔	1	몰도바	1	인도네시아	1	파키스탄	2
대만	1	미국	1	체코	1	프랑스	3
독일	3	베트남	1	캐나다	1		
멕시코	1	아일랜드	1	콜롬비아	1		

다. 향후일정(안)

- 2019.10~11월 중 「2019 명예시민의 날」 기념식 개최 및 수여

라. 관련근거

1) 수여대상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2조

-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

-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

※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

2) 수여대상자 결정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1항

-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

3) 서울시의회 동의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2항

-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

※ 다만,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국제교류담당관 미주구주팀 이현음 (☎ 2133-5285)